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4] <신설 2015. 3. 25.>

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(제39조의3 관련)

- 1.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, 수집 · 운반,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, 수집 · 운반, 처리 또는 살포할 때마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 - 가. 컴퓨터
 - 나. 이동형 통신수단
 - 다.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
- 2.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,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전자인계서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.
- 3.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·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(GPS) 등을 고의로 훼손·분실하거나 자료의 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그 밖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